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4. 11. 21 사하구청장
- 나. 회 부 일 자 : 1994. 11. 22
- 다. 상 정 일 자 : 제38회 사하구의회(정기회)

제3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94. 12. 1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청소과장 김 방 옥)

가. 제안이유

- '95. 1. 1부터 쓰레기 수거요금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일반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용 쓰레기 봉투제작, 공급 및 쓰레기수거 수수료의 징수방법과 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2조)
- 폐기물 배출자의 감량화시책 적극협조의무 부여 및 배출자에 대한 감량화시설을 설치토록 명할 수 있게 함(안 제3조)
- 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에 있어서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기타폐기물로 분리토록 간소화함(안 제4조)
- 신축 공동주택 사업자에 대해 당해 건물의 준공전에 보관시설을 설치토록 의무화함(안 제5조)
- 구청장이 지정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함(안 제6조)
- 쓰레기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부적정 배출폐기물에 대해 수거지연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집·운반

업체의 봉투 미사용 폐기물 수집운반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쓰레기 봉투의 용도, 색상을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도록 함(안 제9조)
- 쓰레기 봉투 제작시 구의 휘장, 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
- 봉투공급과 판매체계를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계약서 명시 항목 중 처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2조)
-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방법을 개선함(안 제13조)
 - 봉투구입시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지게 하고, 대행폐기물은 폐기물 종류에 따라 부과토록 함
- 봉투공급대금은 선납토록 함(안 제14조)
-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대해 쓰레기 기본배출량을 기준으로 봉투를 무상 제공하게 함(안 제16조)
- 폐기물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가도록 하고, 봉투판매수입을 쓰레기 수거인력·장비 등 개선확충에 투자함(안 제17조)
-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대상을 점포, 상가, 시장 등과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로 함(안 제18조)
- 예산범위내에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안 제1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폐기물의 분리보관 방법에 있어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토록 하였으며, 배출자에 대한 감량화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에서 제작한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수료 징수방법을 개선하는 동시에 폐기물 등을 무단투기할 시에 과태료 부과기준 등 여러가지 새로운 문제점이 있어 일반가정이나 업소 등에서 이행사항을 숙지 못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바 반사회 등을 활용하여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에게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질의자 : 신준식 의원〉 '83년도 정수책정 당시 인구 24만 정도로 청소대행업체가 2개 업체를 허가 후 현재 38만의 인구로 추가정수가 되어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기관의 견해와 정수를 추가책정할 계획은 없는지	청소장비의 보강 등으로 수거능력이 보강되어 현재로서는 정수확대에 대해서는 검토되지 않고 있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재석위원 8명중 찬성 7, 반대 1명)